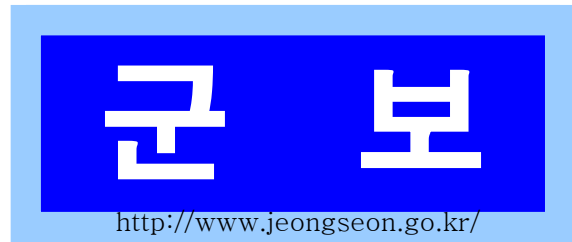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217호 2010. 4. 28. (수)

【조 례】

- 정선군조례 제2208호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1

【공 고】

- 정선군공고 제2010-238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5
- 정선군공고 제2010-239호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 공고..... 7
- 정선군공고 제2010-240호 방범용 CCTV 설치·운영을 위한 행정예고..... 8
- 정선군공고 제2010-247호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11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3, FAX:560-2592)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선군수 권한대행 부 군 수

2010. 4. 28.

정선군조례 제2208호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정선군 관할구역안에 있는 유치원과 초·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급식비와 식품비를 지원하여 우수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급식의 안전성과 질을 높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함은 물론, 우수 농·축산물 소비촉진과 군민의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학교 안에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당해 학교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식재료”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
 -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인증농산물
 - 다.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 라.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 마. 수산물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원양산 포함)
 - 바. 생산자단체 또는 군수가 인증한 농·특산물
3. “식품비”라 함은 급식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 급식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의 제조 가공에 사용되는 농·축산물과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4.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5. “학교급식비”라 함은 학교급식에 있어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예산지원 등) ①군수는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급식비와 식품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학교급식비와 식품비의 지원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로 하며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방법) ①지원대상자는 학교 급식이 신선하고 안전한 우수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 대상자에게는 학교급식비와 식재료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③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④직영급식을 유도하기 위하여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지원을 보류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강원도정선교육청교육장이 취합·검토하여 정선군수에게 제출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학생들이 부담하는 1인당 학교급식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학교급식 운영 계획

제6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설치) ①군수는 제5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학교급식비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정선군청 관련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고 당연직은 관련공무원이 되며 위촉직은 단체가

추천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농업정책과장, 보건소장
 2. 강원도정선군교육청 교육과장
 3. 정선군의회 의원 2인
 4. 정선군 소재 학부모단체
 5. 정선군 소재 교원단체
 6. 정선군 소재 농민단체
 7. 정선군 소재 학교 영양사 단체
 8. 기타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회의 등)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학교급식관리센터의 지원) ①학교급식의 질과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신선하고 안전한 우수 농·축산물 등 식재료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관리센터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학교급식관리센터의 설치와 운영,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취지에 맞게 사용하고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매학기 종료 후 1개월 안에 군수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군수는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가 제10조의 보고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군수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지도·감독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등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동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정선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제 정 이 유

- 제17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상정되어 의결된 조례로, 정선군 관할구역에 있는 유치원, 초·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학교급식비와 식품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주 요 내 용

-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급식비와 식품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항)
- 지원대상을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으로 규정함(안 제3조제2항)
- 학교급식비와 식재료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등을 규정함(안 제6조 ~ 제8조)
- 학교급식관리센터의 설치·지원을 규정함(안 제9조)
- 다른 조례의 폐지(부칙 제2조)
 - 「정선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선군공고 제2010-238호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2010. 4. 26

정 선 군 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0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안내

- 열람기간 : 2010년 4월 26일 ~ 5월 17일
- 열람장소 :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 및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과표팀
- 열람대상 : 118,881필지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m²당 가격(원)

○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10년 4월 26일 ~ 5월 17일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 및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과표팀
- 제출방법 : 열람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의견제출요령을 안내해 드립니다

땅값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전국의 땅값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약 50만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2010.1.1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를 감정평가한 후 그 표준지와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지의 땅값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조사된 땅값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같은 용도지역안에 있고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와의 토지특성상 차이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의견을 제출하실 때는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조사된 땅값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 재산세·취득세·등록세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됩니다.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는 이 땅값을 적용합니다.
-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산정등에 사용됩니다.

정선군공고 제2010-239호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 공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는 “어천제축제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본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4. 20.

정 선 군 수

1. 사 업 명 : 어천제 축제공사

2. 사업시행자 : 주 소 강원도 원주시 단계로 283
성 명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3. 수용대상 토지 및 물건

수용토지의 표시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소재지	지 번 (당초지번)	물건의종류 및 규격	수량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683-10 (683-1)	전	20	유병태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4-22			

4. 열람공고기간 : 2010. 4. 20. ~ 2010. 5. 4.(공고일 익일부터 14일간)

5. 기타사항 : 수용재결신청 관계서류는 정선군청 재난안전관리과 (하천관리팀 ☎ 033-560-2481)에 비치하오니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공고 제2010-240호

각종 범죄예방과 범죄발생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2010년 방범용 CCTV 설치·운영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4. 20.

정 선 군 수

방범용 CCTV 설치·운영을 위한 행정예고

1. 사 업 명 : 2010년도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2. 시 행 청 : 정선군
3. 공고기간 : 2010.04.20~05.10(20일간)
4. 의견제출 : 2010.04.20~05.10(20일간)
5. 공고방법 : 정선군청 홈페이지(<http://www.jeongseon.go.kr>)
6. 근거법규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와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7. 설치장소

연 번	설 치 장 소		비고
	위 치	세 부 장 소	
1	고한읍 고한리 39-88번지	갈래교→태백방향 200M지점	차량번호인식
2	사북읍 사북리 산72-5번지	선명아파트→고한방면 300M지점	차량번호인식
3	사북읍 사북리 436-33번지	38국도 사북진입로 전 500M지점	차량번호인식
4	사북읍 사북리 산161-15번지	꿈의궁전→사북방향 200M지점	차량번호인식
5	사북읍 사북리 산139-42번지	꿈의궁전→직전리방향 700M지점	차량번호인식
6	사북읍 사북리 370번지	삼거리 식당 앞	생활방범
7	고한읍 고한리 62-1번지	고한 신한은행 앞	생활방범
8	고한읍 고한리 94-28번지	고한 우체국 앞	생활방범
9	고한읍 고한리 154-3번지	고토일 버스터미널	생활방범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정선군청 자치행정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 출 처 : 정선군청 자치행정과

라. 제출방법

○ 우편 : (우)233-804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리 267

○ 팩스 : 033)560-2590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공청회 개최계획 : 행정예고로 같음함.

9.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자치행정과(☎560-22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용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행정예고(안)	의견제출(안)	사 유

정선군공고 제2010-247호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역균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및 행정절차법 제 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에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주민등록상 주소 및 법인의 소재지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0. 04. 22.

정 선 군 수

1. 공고기간 : 2010년 04월 23일~2010년 05월 07일
2. 의견제출 준비기간 : 2010년 05월 08일~2010년 05월 18일
3.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지정 취소				
2. 당사자	성명(명칭)	(주)강원레저개발 대표이사 박윤배				
	주 소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79-37번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정선군 고시 제2002-64(2002.8.19)호로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두문레저타운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2007. 7월 실시계획 승인신청 하였으나 2008. 4월 요구한 개발행위 보완사항 등에 대한 조치결과가 없어, 현재까지 착공은 물론, 실시계획 승인 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개발사업의 계속시행이 불가능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지정 취소				
5. 법적근거 및 조문 내용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2호 및 제53조의2				
6. 청 문 실 시	기 관 명	정선군	부서명	산업경제과	담 당 자	장 성 칠
	주 소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번지			전화번호	033)560-2438
	일 시	2010년 05월 19일 14시부터 15시까지 (1시간)				
	장 소	정선군청 청문실				
	주 제 자	소속 및 직위		정선군청 감사법무담당		
		성 명		문 용 택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0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성 명 (서명 또는 인) 정선균수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